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8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83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나736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가소332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김진아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2020. 5. 14.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나73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